

	안산대학교가족회사운영규정	규정번호	4-1-4
		제정일자	2011.10.0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산학협력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가족회사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회사'라 함은 본교와 기술·경영지도, 공동연구, 취업, 교육 및 공용장비 이용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본교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체'란 본교와 협력이 필요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지도교수'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써 개별 가족회사와 관련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교원을 말하며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포함한다.
4. '가족운영협의회'란 본교에 가입된 가족회사에 대한 전체 운영협의회 및 직종 분류에 따른 계열별 운영협의체를 말한다.
5. '가족회사 대표'란 본교에 가입된 가족회사 전원을 대표하는 자로 가족회사 중 대표로 선출된 기업체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전담부서) ① 가족회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가족회사운영팀(이하 '가족회사운영팀'이라 한다)이 관련업무를 전담한다.

② 가족회사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회사의 가입 접수, 승인, 탈퇴 및 정보관리
2. 가족회사 등급관리 및 가족회사 관련 교원업적평가
3. 가족회사 상담 및 지원
4. 가족회사의 임직원 교육 및 기술개발 등 지원활동
5. 기술, 경영, 마케팅, 특허, 디자인 등 종합지원
6. 가족회사 산업군별 협의체 운영지원
7. 기타 가족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가입 및 승인) ① 가족회사의 가입을 원하는 기업체는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가족회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회사운영팀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친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한다.

제5조(증서발급) ① 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하여는 가족회사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

② 가족회사증서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며 가족회사 정보로 로그인시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탈퇴 등) ① 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폐업으로 확인될 경우에 산학협력

단장의 승인을 얻어 탈퇴 처리한다.

② 가족회사가 사기 등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본교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7조(가족회사에 대한 지원) 본교는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및 경영 자문, 공동연구
2. 공용장비의 이용 및 연구소 설립
3. 취업 및 현장실습 연계[별표 2]
4. 교육 및 기술교류회
5. 가족회사 CEO 및 현장실무자 초청 특강

제8조(등급관리) ① 가족회사운영팀은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며, 등급관리기준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② 등급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족회사운영팀은 가족회사의 등급에 따라 가족회사에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가족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족회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은 계열별 대표교수 3인과 가족회사 대표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족회사에 대한 등급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가족회사 탈퇴 등에 관한 사항
3. 가족회사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의 부의한 사항

제11조(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가족회사 활동

제12조(가족회사 권리 및 의무) ① 가족회사는 본교가 제공하는 산학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가족회사는 본교의 가족회사로서의 신의 성실 의무를 가진다.

제13조(기술교류회) ① 기업과 대학 간 상호연계 협력을 위하여 기술교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가족회사 대표) ① 가족회사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회사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② 가족회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가족회사 대표는 가족회사 전원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의 건의
2. 대학의 중요한 행사의 참여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가족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대표)를 둘 수 있다.

제15조(장학금 기탁) 가족회사는 본교에 가족회사 산학협력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16조(재정) 가족회사운영팀의 재정은 산학협력단 지원금과 지원기관의 지원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정보보호) 센터는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